

●국무총리훈령 제811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03월 21일

국무총리 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신청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6조”를 “「지방자치법」 제184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사항이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 컨설팅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